KOSHA GUIDE

C - 99 - 2015

부 록

부록 1.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

- 제18조(허용지내력) 지반의 허용지내력(許容地耐力)은 「건축구조기준」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.

부록 2.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

[별표 8]

지반의 허용지내력(제18조 관련)

(단위 : kN/m²)

지 반		장기응력에 대한	단기응력에 대한
		허용지내력	허용지내력
경암반	화강암·석록암·편마암·안산암 등의	4000	각각 장기응력에 대한
	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		
연암반	판암·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	2000	
	혈암·토단반 등의 암반	1000	
자갈		300	허용지내력 값의 1.5 ·배로 한다.
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		200	
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		150	
모래 또는 점토		100	